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위촉 구의회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6년 4월 28일(화)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4.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91호)
- 나. 회부일자 : 2026. 4. 7.
-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6. 4. 16.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이창원 감사담당관)

### 가. 제안이유

-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을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등을 통해 민원처리에 대한 신뢰성과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성북구 옴부즈만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 규정에 따라 구의회 추천 인원 1명과 성북구 옴부즈만 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2명을 성북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성북구의회 동의 받기 위하여 함.

### 나. 주요내용

- 가.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 : 3명
- 나. 옴부즈만 운영 개요
  - 위촉인원 : 3명

- 위촉기간 : '26. 5월 ~ '28. 5월 (임기 2년, 1회 연임가능)
- 근무장소 : 성북구청 6층 직소민원실
- 근무시간 : 주 3회 운영 (월, 수, 금) (주 1일 3시간 순환근무)
- '26년도 예산 : 20,800천원  
(수당 16,800천원 /사무관리비 등 3,000천원/업무추진비 등 1,000천원)
- 근무수당 : 100,000원/1일

#### 다. ombudsman 주요업무

-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처리 및 이와 관련된 시정 권고
-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 ombudsman 스스로 인지한 사안의 채택조사 및 집단민원 중재·조정
- 구정에 대한 감시 및 비위의 시정 등에 대한 조치 권고
-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한 의견표명
-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ombudsman에게 의뢰한 사안의 조사·처리
- 매년 운영상황 구청장과 구의회 보고 및 공표

####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성북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 개요

- 본 동의안은 현직 ombudsman 3명의 임기 만료(2026. 6. 25.)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기 ombudsman을 신규 위촉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 의거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이라 함) 제32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북구는 관련 조례 제정(2021.7.) 및 ombudsman 위촉(2022.6.)을 통해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ombudsman 연간 민원처리 내역**

□ 연간 민원처리 내역

구분	합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각하	종결	심의안내	이첩
2022년	6	1	0	0	1	0	4
2023년	22	0	2	2	1	0	17
2024년	20	2	1	0	0	1	16
2025년	44	1	0	2	4	0	37

□ 주요 내용

- 본 동의안은 임기가 만료되는 ombudsman 3명에 대해 구의회 추천 1명과 ombudsman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한 2명을 포함하여 총 3명을 신규 위촉하려는 것임.
- 위촉 대상자는 2026년 2월 공개모집 후 ombudsman 추천위원회(2026.3.24.)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조례 제3조제3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 위촉 대상자들은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을 비롯하여 고충민원 조사, 감사, 인권 등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행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특히 중앙 및 지방 행정기관, 경찰 등 다양한 분야의 경력을 바탕으로 ombudsman 기능 수행에 필요한 조사·조정 역량을 확보하고 있는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ombu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ombudsman의 구성 등) ③ ombudsman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3명 중 1명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전임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것으로 보임.

**옴부즈만 위촉 동의 대상**

연번	성명	신청자격	주요이력	비고
1	한○○	5급이상 공무원	- 前) ○○구 보건지소장 - 前) ○○구의회 전문위원	구의회 추천
2	이○○	5급이상 공무원	- 前) ○○시 감사담당관 - 前) ○○옴부즈만위원회 인권과장	
3	이○○	5급이상 공무원	- 前)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 **종합 검토 결과**

-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제출된 것으로, 위촉 절차 및 자격요건 검토 결과 법적·절차적 측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위촉 대상자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 옴부즈만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옴부즈만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시정권고 및 제도개선 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처리결과의 공개 및 사후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제도의 운영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4월 28일(화)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4.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92호)
- 나. 회부일자 : 2026. 4. 7.
-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6. 4. 16.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홍지현 안전생활국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조문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 나.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8조, 안 제11조, 제12조)

### 다.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02. 26. ~ 2026. 03. 1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개요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고, 동물보호 및 관리체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법령 정합성과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1)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조문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7조)**

- 「동물보호법 시행령」의 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동물보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등록인식포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상위법 체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2) 동물보호센터 지정 절차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안 제8조)**

- 동물보호센터 지정 기준을 현행화 하고, 「동물보호법」 제35조2)의 위임에 따른

**2) 「동물보호법」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 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2. 제41조에 따른 동물의 반환 등
  3. 제44조에 따른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4. 제45조에 따른 동물의 기증·분양
  5. 제46조에 따른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8조3)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청장이 센터를 지정할 때 평가 과정에 민간단체 추천 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의 참여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위 법령 및 서울시 조례와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센터 지정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3) 용어 정비 및 보호·분양 절차 명확화(안 제11조, 제12조)

- “입양”을 “분양”으로 변경하여 상위법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구조된 동물은 원칙적으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하도록 하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민간단체에 보호조치를 맡길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 또한 소유권이 구로 귀속된 동물의 처리 및 분양 절차를 정비하여 「동물보호법」 제45조 등 관련 규정과의 정합성을 확보한 것임.

## □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용어 및 인용

- 
- 7.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 8.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⑥ 동물보호센터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보호센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 또는 시·군·구에 운영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⑦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36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3.3.27.>
- ③ 제2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는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평가에는 영 제6조에 따른 민간단체 추천인사 및 명예동물보호관이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1., 2023.3.27., 2023.10.4., 2023.12.29., 2025.1.3.>
- ④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해당 자치구의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9.21.>
-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9.21.>
- ⑥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관리에 대한 현황을 해당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⑦ 삭제 <2017.9.21.>

규정을 정비하고, 동물보호 행정의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령 체계 정합성 확보와 제도 개선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됨.

- 특히 동물보호센터 지정 시 동물보호 수준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외부 참여를 의무화한 것은 행정의 자의적 운영을 방지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조치로서 긍정적으로 평가됨.
- 또한 용어 정비와 보호·분양 절차의 명확화는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현장 운영 과정에서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6년 4월 28일(화)  
행정기획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4. 3. 성북구청장 제출 (의안번호 593호)

나. 회부일자 : 2026. 4. 7.

다. 상정일자 : 제318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2026. 4. 16. 상정·의결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의결(의안번호 제2025-312호)에 따라 공공도서관의 제적 및 폐기 도서에 대한 재활용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폐기 또는 제적 자료의 무상배부 규정 신설

### 다.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6. 02. 26. ~ 2026. 03. 18.
- 의 견 : 의견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동성)

□ 개요

-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공도서관에서 발생하는 제적·폐기 도서를 재활용하고 무상 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 안 제18조제3항을 신설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도서관 자료를 기관·단체 및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현재 도서관 자료는 관련 절차에 따라 폐기 처리되고 있으며, 최근 폐기도서 비율이 2021년 4.82%에서 2025년 9.04%로 지속 증가하는 등 상당 규모의 자료가 폐기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따라 단순 폐기 중심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해당 자료의 공공적 활용 가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바, 금번 개정은 도서 자원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임.

**연도별 도서 폐기 현황**

구분	총 장서 수	폐기도서 수	비율	비고
2021	726,577	35,089	4.82	
2022	724,353	36,154	4.99	
2023	696,473	37,463	5.38	
2024	733,393	61,769	8.42	이음도서관 폐관
2025	737,251	66,636	9.04	

- 아울러 현행 법체계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근거 없이 폐기도서를 무상 배부할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바, 무상배부의 대상과 범위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잠재적 위법성 및 운영상의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것으로 판단됨.

#### □ 종합 검토 결과

-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폐기·제적 자료의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자원 순환 촉진 및 행정의 합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됨.
- 특히, 폐기 중심의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적 재활용'을 제도화함으로써 도서 자원의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한편, 무상배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회의록 참고

#### 5. 토론요지: 없음

#### 6. 심사결과: 원안가결

####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